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54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3
나.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7
2. 주요 내용 검토	13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3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16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19
라. 원도심의 지정(안 제7조)	22

마.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활용 특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24
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특례(안 제11조)	29
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안 제12조)	33
아.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8
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안 제16조 및 제17조)	42
차. 보칙 및 벌칙(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45
카. 부칙	4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6. 26.

다.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강릉, 원주, 전주, 나주, 충주, 청주, 경주, 상주 등)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위주의 개발과 인구 유출로 인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음. 원도심의 쇠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문화·주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과거 지역 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과거 광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도심 공동화가 현저한 등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지정함(안 제7조).
- 라.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업무 특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기존 건축물 활용 및 건축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의 활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 운영 및 문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원도심 지정, 공공기관 이전 대상 선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함(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제정안은 과거 지역 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총 7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은 과거 도청 소재지 또는 이에 준하는 광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 및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 중 원도심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안 제2조), 국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역사 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안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지역을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도심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국가에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 의무(안 제8조)를,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 활용 및 건축 규제 완화(안 제9조)를, 이전공공기관 및 원도심 활성화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활용 특례(안 제10조)를 규정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도시혁신계획을 입안하도록 하며,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원도심에 대해서 건폐율·용적률 제한의 완화를 규정함(안 제11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안 제12조), 주차 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13조), 자율학교 운영 및 문화 환경 조성 지원(안 제14조), 재원의 조달 및 지원(안 제15조)을 규정함.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둔(안 제16조 및 제17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8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자료의 제출·보고를 명할 수 있고, 현장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21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이나 조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20조).

제정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안 부칙).

[표 1] 제정안의 기본 구조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및 원도심의 지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원도심의 지정
제3장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 활용 특례	
제8조	공공기관 신설 및 이전 시 우선 배치
제9조	기존 건축물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활용 특례
제4장 원도심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제11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특례
제12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13조	주차 인프라 구축 지원
제14조	교육 및 문화 환경 조성
제15조	재원의 조달 및 지원
제5장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	
제16조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제6장 보칙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	보고 및 검사
제7장 벌칙	
제20조	벌칙
제21조	과태료

나.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위주의 개발과 인구 유출로 인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어 원도심의 쇠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¹⁾

한편,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²⁾은 조례제정을 통해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시 등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도심 권역’³⁾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자치법규가 규율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원 수단이 한정되어 공공기관 이전이나 조세의 감면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수단은 마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이

1)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20)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는 모도시의 외곽에 대규모 신시가지 및 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 원도심의 인구유출 및 유흥시설 발생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4쪽)
“중소도시 외곽 신도시형으로 개발된 전남광주(나주),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 경북(김천) 혁신도시의 경우 격차가 있으나 모도시에서 혁신도시 인구유출, 관할 시·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모도시 인구감소가 나타남”(요약 vi)

2) 군산시, 익산시, 원주시, 진주시, 청주시 등

3)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原都心) 활성화”란 도시발전에 따라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시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도심 권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 기능의 회복을 말한다.

하 “원도심”이라 함)의 지정, 기본계획수립, 공공기관의 우선 배치,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특례 제공, 교육·문화·주차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의무를 부과하면서⁴⁾, 공공기관 등의 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⁶⁾,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3년 7월 10일 시행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로의 이전 원칙 및 개별이전 절차⁷⁾, 이전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⁸⁾ 등 이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개별이전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법 제정의 필요성 및 현행 법률과의 정합성 등을 중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이하 “주택도시보증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 중이며, 동법 제29조에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의 이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혁신도시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입지원칙 규정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제정안과 유사하게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일 제명의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6187호, 복기왕·권영진의원 대표발의) 및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7631호, 이진태의원 대표발의)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 되었는데,

제정안과 여타 제정안들의 ‘원도심의 정의’ 및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등의 지정요건’ 등이 유사하여[표 2] 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토교통부는 과거 도청 소재지 또는 광역 행정·문화 중심지로서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현상 등 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지정, 활성화 사업추진 등 공공기관 이전 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반영한 별도의 법 제정 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개정·활용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표 2] 제정안과 기발의 법률간 비교

구분	제정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이건태의원 안
원도심 정의	과거 도청소재지 등 광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문화적 상징성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도심공동화로 재생 필요한 지역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면적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의 정체·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요건 충족 지역 (노후계획도시·재정비촉진지구 ⁹⁾ 제외)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 도시 확장으로 주거환경 쇠퇴·낙후, 도시기능 회복 필요 지역 (노후계획도시 ¹⁰⁾ 제외)
원도심(정비 및 지원구역 등) 지정요건	① 과거 광역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문화적 상징성 보유 ②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거나 도심 공동화 현저 ③ 공공기관 이전 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④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¹¹⁾ 에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지정 가능	①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 ② 지역산업 쇠퇴·경제활동인구 유출로 경제적 활성화 필요 ③ 비효율적 토지 이용으로 종합적 공간 재정비 필요 ④ 국가유산 또는 원도심 정체성 유지·관리 및 발전에 대한 지원 필요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가능	①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 ② 지역산업 쇠퇴·경제활동인구 유출로 경제적 활성화 필요 ③ 비효율적 토지 이용으로 종합적 공간 재정비 필요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가능
공공기관 이전·업무시설 우선배치	공공기관 신설·이전 시 원도심 우선 배치 노력의무 : 이전 대상 공공기관 확정 절차 규정	공공기관 등은 업무시설 신설·증축·이전 및 통합시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우선 입지 의무	규정 없음

※자료: 각 제정안을 바탕으로 정리

이하에서는 본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9)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주요 내용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과거 지역 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이하 “원도심”이라 한다)이란 과거 도청 소재지 또는 이에 준하는 광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 및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 중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이란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원도심에서 공공기관 이전, 기반시설 정비,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 제1조는 과거 지역 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은 과거 도청 소재지 또는 이에 준하는 광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및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 중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으로, ‘이전공공기관’은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지정된 원도심에서 공공기관 이전·기반시설 정비·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정비, 문화·지역자원 활용, 주거환경 개선 등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이나,

「도시재생법」의 도시 쇠퇴지역 규정에 원도심을 특정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필요시 지역 내 역사·문화 등 핵심 거점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에 대해 별도 규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만큼, 특정 지역 활성화를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으로 별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 이전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자원” 용어가 반복되어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법」에 이미 규정¹²⁾하고 있으며, 제정안 및 「혁신도시법」 간 정의의 범위가 다른 점 및 제정안에 「혁신도시법」에 대한 준용조항¹³⁾이 있는 점에서 제정안에서 ‘원도심 이전공공기관’ 등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제정안」

제8조(공공기관 신설 및 이전 시 우선 배치) ① ~ ④ (생략)

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우선구매,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등 이전공공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3조는 각 주체별 책무 규정으로, 국가로 하여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승인¹⁴⁾ 등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또한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¹⁵⁾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절차¹⁶⁾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다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5) 「제정안」

제16조(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16) 「제정안」

제8조(공공기관 신설 및 이전 시 우선 배치) ① 국가는 공공기관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업무 특성, 지역 여건 등을 중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 입법 시 원도심으로 이전을 계획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심의 및 이전 절차를 거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원도심 이전에 대한 별도의 심사와 절차 규정을 둘 필요성 및 통일적 규율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혁신도시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정안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혁신도시법」상 이전 원칙 및 우선적용에 있어 그 관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도심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도심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16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공기관 이전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원도심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 정비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방안 5.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계획 6.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방안 7. 그 밖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원도심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16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며 수립·변경 후에는 관보 고시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및 제6조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2단계 계획 체계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은 기본계획수립 시 포함할 내용으로 ‘원도심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면서, ‘원도심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중복하여 제정안(제7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원도심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에 ‘원도심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시책 및 「혁신도시법」상 이전기관이 수립하는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시 충돌이 우려되고,

지역 내 원도심의 입지는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¹⁷⁾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원도심 지역의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 자원, 주민 정주여건 등 현황과 도입 필요 기능 등을 지방정부에서 상세히 파악 중임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모두 지방정부에서 수립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8의3. 방재·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원도심의 지정(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원도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제16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도심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거 광역행정의 중심지로서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보유한 지역 2.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도심 공동화 현상이 현저한 지역 3. 공공기관 이전 시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도심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원도심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원도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역사·문화적 상징성, 인구 감소 또는 도심 공동화, 공공기관 이전 시 파급효과, 도시지역 해당 여부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

준 지역을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도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첨부를 요건으로 하며, 지정 후에는 관보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원도심 지정의 변경·해제에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는 원도심 지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내용임.

국토교통부는 지역 내 원도심의 입지는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도심 지정요건 중 하나인 ‘과거 광역행정의 중심지로서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보유한 지역’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광역 행정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는 도시가 대상인지, 과거 광역 행정기능을 담당하였으나 타 도시 또는 지역으로 기능이 이전된 도시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 원도심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마.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활용 특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 정 안
제8조(공공기관 신설 및 이전 시 우선 배치) ① 국가는 공공기관을 신규로 설립 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업무 특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도심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도심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16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우선구매,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등 이전공공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활용 및 지원) ① 이전공공기관이 원도심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유허 공공청사 2. 폐교된 학교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제 정 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화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보 현황,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활용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시행자에게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80까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양여 또는 대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원도심 활성화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대부 절차, 대부료 감면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원도심 우선 배치, 기존 건축물 및 국·공유재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는 국가가 공공기관을 신규 설립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정된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확정하도록 하며,

안 제9조는 이전공공기관이 원도심 내 유휴 공공청사, 폐교된 학교시설, 등록문화재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 시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양여하거나,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대부하되 대부료의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우선 배

치로 인구·고용 유입 효과를 도모하고,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및 건축 규제 완화로 원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며, 국·공유재산 특례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의 정착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은 원도심 내 국유재산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양여하거나,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대부하되 대부료의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특례는 동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¹⁸⁾ 특례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함.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법」 제29조는 혁신도시로의 공공이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규정하는 별도의 특별법은 「혁신도시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원도심 우선배치’ 및 이전 공공기관의 선정기준·절차 관련 원도심 활성화위원회 심의는 현행 「혁신도시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이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양여 특례 및 수익매각 규정 신설 등 개별법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 및 다른 기관·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특례(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원도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시혁신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이전 부지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3.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원도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안 제11조는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원도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0조의3제1항¹⁹⁾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의2²⁰⁾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에 따라 도시혁신계획을 입안하도록 하며,

도시혁신계획의 포함사항 및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원도심에 대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²¹⁾·용적률²²⁾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00분의 20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3.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제1호 또는 제2호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한편,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²³⁾가 도시 내 중심지역 등 도시공간의 창의적·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 및 입안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토계획법」 제35조의2²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계획을 입안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결정 권한 배분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도시재생법」²⁵⁾과 같이 특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제3항·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례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아울러, 도시혁신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²⁶⁾, 별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을 두는 것은 규정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 내 중심지역 등 도시공간의 창의·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며, 필요시 국토부장관도 지정·입안 가능토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지정·입안 주체 등은 「국토계획법」을 따를 필요가 있고,

도시혁신구역은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등 도시규제 제약을 받지 않는 구역으로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9.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제 정 안

12. 그 밖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에 용지 매입비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부담금의 감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조세감면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제정안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유사한 입법례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가 있음.²⁷⁾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동법 및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동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²⁸⁾, 「지방세특례제한법」 또한 동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²⁹⁾,

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8)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실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함.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개별법에 세제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구체적인 세제지원 규정이 없으면 세제지원이 불가능하여 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아울러, 제정안의 부담금을 감면·면제과 관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5항³⁰⁾에서 부담금의 감면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안 제12조제1항)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는바,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일부 원도심(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30)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률의 일반성·보편성 원칙 및 타 지역내 입주기업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인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부담금의 준조세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감면대상 규정, 형평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 등이 필요하여 개발이익환수법령에 따른 현행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며,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는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생태계 복원목적 및 국방목적 사업만 인정하고 있어³¹⁾, 개별법에 부담금 감면 특례를 신설할 경우 다른 개발사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31)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아.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 정 안
제13조(주차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 통합주차타워 2.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3. 그 밖에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주차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 및 문화 환경 조성) ① 원도심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및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 및 운영

제 정 안

3. 그 밖에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및 사업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원의 조달 및 지원) ① 국가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 인프라 구축 지원, 교육·문화 환경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3조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 통합주차타워·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등 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14조는 원도심 소재 초·중등학교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 이수자에게 해당 학교급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을 인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지구 지정·관리, 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국가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설치·운용하거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의 조항들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규정으로, 주차 인프라 지원과 자율학교·문화시설 조성은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재원 조달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금 설치 및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원도심의 쇠퇴를 해결하고, 주차난 해소 및 교통편의 지원, 교육·문화기반 지원 등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국가유산청은 원도심의 문화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근현대유산이 특성상 원도심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외에 비지정 유산을 활용하는 국가유산청 사업도 지원사업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안 제16조 및 제17조)

제 정 안
제16조(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원도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6조는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위임 사항 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17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도심의 지정·변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공공기관 이전, 재원의 조달 및 배분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합리적이고 통일적으로 심의·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일부 원도심(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수의 장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성이 상당한지 논의해

불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원도심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변경, 재원 조달 및 배
분³²⁾ 등에 대한 위원회 운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공공기관 등의 지방
이전 등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심의기구가 불필요하고,

공공기관 이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원도심 활성화 및 재원 조
달계획 등은 도시재생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
해 유사 위원회의 신설보다는 기존 위원회³³⁾ 활용이 효율적 이라는 의
견임.

32)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지방정부 자체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지자체
자율성을 고려하여 지방위원회 심의 필요)

3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차. 보칙 및 벌칙(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 정 안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거나 회계서류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 활용 지원
2. 제12조에 따른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3. 제13조에 따른 주차 인프라 구축 지원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또는 문화 환경 조성 지원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정 안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이 법의 집행·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19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회계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20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존 건축물 활용·조세감면·주차 인프라·교육문화 환경 조성 지원을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개인의 대리인 등이 위반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21조는 보고 명령 불이행·거짓 보고 시 500만 원 이하, 조사·검

사 거부·방해·기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조항들은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적·형사적 집행 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권한 위임·위탁을 통한 효율적 집행 체계 구축, 보고·검사를 통한 사업 관리·감독, 부정 수급에 대한 형사제재 및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이 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카. 부칙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이며, 안 부칙 제2조는 제정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³⁴⁾.

문 의 처
02)6788-5578

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법률 제8200호, 2007. 1. 3.>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8200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08년에 실시한다.